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437
----------	-----

제출년월일 : 2021. 11. 2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세출구조 조정, 연도 중 보조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주민 중심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29,87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17백만원이 증액된 570,388백만원, 특별회계는 4,235백만원이 감액되어 59,486백만원 임.

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4,981백만원, 지방교부세 1,426백만원, 조정교부금등 1,23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3,340백만원, 지방채 △7,160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30백만원, 조정교부금등 1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3,486백만원, 지방채 △840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39백만원 임.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4,019백만원, 재무활동 341백만원, 행정운영경비 △543백만원,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4,312백만원, 재무활동 75백만원, 행정운영경비 2백만원 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0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의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629,874	630,292	△418	△0.07	
일반회계	570,388	566,571	3,817	0.67	
특별회계	59,486	63,721	△4,235	△6.65	

2. 일반회계

■ 세입	-----		3,817백만원
○ 세외수입	-----		4,981백만원
· 기타사용료	△10	· 기타수수료	64
· 공공예금이자수입	400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530
· 그외수입	1	· 기타과태료	△4
○ 지방교부세	-----		1,426백만원
· 보통교부세	596	· 특별교부세	830
○ 조정교부금등	-----		1,230백만원
· 특별조정교부금	1,230		
○ 보조금	-----		3,340백만원
· 국고보조금	3,131	· 도비보조금	209
○ 지방채	-----		△7,160백만원
· 정부자금채	△11,910	· 금융기관채	4,750

▣ 세 출 ----- 3,817백만원

- 정 책 사 업 ----- 4,019백만원
- 재 무 활 동 ----- 341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 △543백만원

【경비성질별】

- 인 건 비 ----- △830백만원
- 물 건 비 ----- 952백만원
- 경 상 이 전 ----- △6,696백만원
- 자 본 지 출 ----- 12,668백만원
- 내 부 거 래 ----- △1,001백만원
- 예 비 비 맞기 타 ----- △1,276백만원

【기 능 별】

- 일반공공행정 ----- 109백만원
- 공공질서및안전 ----- △86백만원
- 교 육 ----- △174백만원
- 문 화 관 광 ----- △2,655백만원
- 환 경 ----- 2,859백만원
- 사 회 복 지 ----- △1,023백만원
- 보 건 ----- △121백만원
- 농 립 해 양 수 산 ----- 4,631백만원
- 산 업 · 중 소 기 업 ----- △1,980백만원
- 교 통 및 물 류 ----- 378백만원
- 국 토 및 지 역 개 발 ----- 4,900백만원
- 예 비 비 ----- △2,618백만원
- 기 타 ----- △403백만원

3. 특별회계

회계별규모	-----	△4,235백만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40백만원
○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	△818백만원
○ 수질개선특별회계	-----	△2,868백만원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	△509백만원

세입	-----	△4,235백만원	
○ 세외수입	-----	930백만원	
·매각사업수입	675	·기타사업수입	200
·그외수입	55		
○ 조정교부금등	-----	10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00		
○ 보조금	-----	△3,486백만원	
·국고보조금	△3,430	·도비보조금	△56
○ 지방채	-----	△840백만원	
·정부자금채	△84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939백만원	
·전년도이월금	27	·전입금	△966

■ 세 출 ----- △4,235백만원

- 정 책 사 업 ----- △4,312백만원
- 재 무 활 동 ----- 75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 2백만원

【경비성질별】

- 물 건 비 ----- 2백만원
- 경 상 이 전 ----- △238백만원
- 자 본 지 출 ----- △4,074백만원
- 예비비 및 기타 ----- 75백만원

【기 능 별】

- 환 경 ----- △3,379백만원
- 사 회 복 지 ----- △40백만원
- 국토및지역개발 ----- △818백만원
- 기 타 ----- 2백만원